

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법령적합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임.

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으나, 개정조례안 제13조 제1항의 기금의 결산부분은 상위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수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개정조례안

제13조(기금의 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법

제125조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개정. '99. 8. 31, 시행. 2000. 1. 1)

□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제7조의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위원회 일정인원을 시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됨.

동 개정조례안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

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

1. 총무과장, 회계과장, 문화체육과장

2.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

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

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②위원회는 위원장,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총무국장,사회산업국장,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장,시의원3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그리고, 제8조제2항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명만으로 찬성으로도 의결될 수 있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/3출석과 ^{출석위원}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동 개정조례안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